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9142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방기선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박훈석, 김수경
변 론 종 결 2026. 6. 12.
판 결 선 고 2026. 7.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378,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7.부터 2026.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9,105,612원 및 그중 330,563,908원에 대하여는 2024.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8,541,704원에 대하여는 2024. 6.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도서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위 회사가 저작권 내지 출판권을 가진 'D(이하 '이 사건 만화'라 한다)'에 관하여, 2024. 1. 19. 이 사건 만화 중 제1 내지 4권에 관하여, 2024. 4. 1. 이 사건 만화 중 제5권에 관하여 각 한국어 번역출판물을 배포·판매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는 내용의 번역출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E' 사이트에서 일명 'F'으로 활동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만화에 관한 배타적발행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만화를 직접 번역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하였는데, 원고는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만화에 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내지 배타적 발행권을 취득한 후 위 사이트에 이 사건 만화가 정식 번역되어 출간됨을 알리고 위 사이트에 이 사건 만화의 기존 번역물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4. 3.



27.부터 같은 해 6. 1.까지 이 사건 만화를 번역하여 'G' 사이트의 운영자인 일명 H에게 제공하였고, 2025. 1. 10.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춘천지방법원 2024고약 2776호),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4. 3.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G'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일명 'H', 이하 'H')와 원고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만화를 번역한 뒤 이를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는 2024. 3. 27.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사이에 피고 주거지인 강원 춘천시 I건물, J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만화 총 112건을 번역한 뒤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H'에게 전달하고, 'H'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만화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성명불상의 'H'와 공모하여 이 사건 만화를 번역한 후 2차적 저작물인 번역 저작물을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 사이트에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

다. 'G' 사이트에는 2024. 3. 27.부터 2024. 6. 17.까지 이 사건 만화의 번역물이 122회에 걸쳐 업로드 되었고¹⁾, 2026. 1. 7. 기준 조회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회차	조회수	회차	조회수	회차	조회수
1화	57,295	42화	27,693	77화	26,456
2화	44,244	43화	27,724	78화	25,770
3화	41,278	44화	27,651	79화	25,531
4화	39,000	45화	27,672	80화	25,766

1) 1화부터 112화까지 업로드 되었으나, 일부 회차(47화, 50화, 76화, 84화, 98화, 100화, 104화)가 2~5회로 나뉘어져 있어 총 업로드 횟수는 122회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21

5화	38,124	46화	27,671	81화	25,782
6화	37,441	47화	27,775	82화	25,815
7화	36,330	47.5화	27,670	83화	25,583
8화	35,802	48화	27,362	84화	25,567
9화	34,949	49화	27,442	84.5화	25,471
10화	34,986	50화	27,212	85화	25,688
11화	34,774	50.5화	26,842	86화	25,549
12화	34,243	51화	26,682	87화	25,514
13화	34,136	52화	26,576	88화	25,374
14화	33,722	53화	26,610	89화	25,263
15화	33,707	54화	26,656	90화	25,433
16화	33,291	55화	26,712	91화	25,490
17화	33,238	56화	26,487	92화	25,575
18화	32,565	57화	26,281	93화	25,712
19화	31,786	58화	26,265	94화	25,686
20화	31,760	59화	26,249	95화	26,163
21화	31,516	60화	26,341	96화	25,844
22화	31,456	61화	26,198	97화	25,894
23화	31,359	62화	26,161	98화	26,815
24화	31,165	63화	26,163	98.5화	26,058
25화	31,533	64화	26,227	99화	26,562
26화	30,802	65화	26,157	100화	27,163
27화	30,128	66화	26,149	100.5화	26,788
28화	30,569	67화	26,132	101화	27,552
29화	30,079	68화	26,073	102화	27,680
30화	29,873	69화	25,290	103화	28,449
31화	29,477	70화	26,085	104화	34,572
32화	29,134	71화	26,007	104.5화	34,232
33화	29,093	72화	25,983	105화	32,971
34화	28,846	73화	25,876	106화	32,657
35화	28,544	74화	25,907	107화	32,557
36화	28,289	75화	26,167	108화	38,377
37화	28,068	76화	26,129	109화	27,739
38화	27,972	76.4화	26,022	110화	31,321
39화	27,830	76.5화	26,065	111화	32,518
40화	28,043	76.6화	26,083	112화	49,714
41화	27,789	76.7화	25,992	조회수 합계	3,571,32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4,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만화의 배타적발행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만화를 무단으로 번역하여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선택적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만화의 배타적발행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만화를 무단으로 번역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여 원고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적인 취미로 이 사건 만화를 번역하였을 뿐 'G' 사이트의 운영자인 H과 공모하여 'G' 사이트에 이 사건 만화의 번역물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약식명령에 의하면, 피고는 H과 공모하여 이 사건 만화의 번역물을 'G'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사정이 없다(오히려 갑 제8, 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E' 사이트에 H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 수사기관에서 H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이 사건 만화의 번역물을 'G' 사이트에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인 취미이자 팬 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만화를 번역하여 인터넷에 업로드 하였으므로, 이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용의 경위나 방법 등과 같이 위 각호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에 관하여는 그 이용이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을 나타내도록 변형한 것인지, 원저작물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목적과 성격을 가지는지, 원저작물을 변형한 정도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필요한 수준보다 더 높은 정도에 이르렀는지, 공익적이거나 비영



리적인 이용인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에 관하여는 원저작물이 사실적·정보적 성격을 가진 저작물인지, 공표되거나 발행된 저작물인지 등이 고려되고,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에 관하여는 원저작물 전체를 기준으로 그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인 비중이나 질적인 중요성이 낮은지, 이용자가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것인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에 관하여는 저작물의 이용이 원저작물 또는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현재 시장의 수요나 장래 개발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통상적인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그 시장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없거나 적은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만화는 원고가 운영하는 'K' 사이트를 통하여 유료로 제공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만화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그대로 번역하여 'G' 사이트에 게시한 점, ③ 피고가 'G' 사이트에 이 사건 만화를 게시한 행위는 원고가 운영하는 'K' 사이트를 통하여 유료로 이 사건 만화를 이용하는 고객의 감소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만화의 시장가치의 훼손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만화가 불법 유통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만화의 잠재적 구매자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339,105,612원(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액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원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K' 사이트에는 이 사건 만화가 총 38화로 제공되고 있고, 피고는 'G' 사이트에 위 38화를 각 3~6회로 나누어 총 112화로 게시하였으므로, 'G' 사이트의 개별 회차 조회수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원고가 운영하는 'K' 사이트 한 회차분 조회수로 산정한 것이 별지 표 기재 '조회수 추정' 항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조회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²⁾,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K'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이 사건 만화의 각 회차에 대응하는 'G'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만화 번역물의 회차를 확인할 수 없다.

나) 원고는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만화의 번역물이 'G' 사이트 외에도 다른 여러 경로로 유통되고 있는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23 만화산업백서(갑 제15호증)'의 내용에 비추어 산정한 '실제 불법경로 조회자 전체 추정배수'는 4.904³⁾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실제 불법경로 조회자 전체 추정배수'를 산정한 근거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이상 위 '실제 불법경로 조회자 전체

2) 별지 표 '조회수 추정' 항목 기재 조회수는 원고가 제출한 조회수와 관련된 증거(갑 제12, 22호증)와 그 수치가 다르다.

3) = '만화·웹툰 불법 이용 경험자 비율' 61.3% ÷ '해외 스캔 만화 사이트 등을 통한 이용 경험자 비율' 12.5%



추정배수'를 이용하여 'G' 사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적인 경로로 이 사건 만화를 이용한 조회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G' 사이트가 아닌 다른 불법적인 경로로 이 사건 만화의 번역물이 유통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만화를 무단으로 번역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정하는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한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손해액을 96,378,406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운영하는 'K'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이 사건 만화 총 38화의 각 회차별 'G' 사이트를 통한 이용자수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26. 1. 7. 기준 'G' 사이트에 게시된 총 122개 게시물의 전체 조회수 평균 29,273회(= 2026. 1. 7. 기준 전체 조회수 3,571,326회 ÷ 전체 게시물 122개, 소수점 이하 버림)를 각 회차별 이용자수로 본다.

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23 만화산업백서'에 의하면, 'G' 사이트와 같



은 해외 스캔 만화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적인 이용자 중 불법적인 경로로 만화를 이용할 수 없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정식 사이트에서 만화를 감상할 의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39.7%로 확인되므로, 이를 유료 결제자 추정비율로 인정한다.

다) 원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K' 사이트를 통한 이용자들의 소장횟수, 대여횟수를 고려하여 별지 표 '회차당 추정매출' 항목 기재와 같이 추정매출을 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원고의 회차당 추정매출로 인정한다(단,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G' 사이트에는 2024. 3. 27.부터 2024. 6. 17.까지 이 사건 만화의 번역물이 총 112화로 나뉘어 게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만화 중 제1 내지 4권에 대하여는 2024. 1. 19., 제5권에 대하여는 2024. 4. 1. 각 배타적발행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제5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2024. 4. 1. 이후부터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지만, 'G'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만화의 번역물 총 112화 중 어느 회차가 이 사건 만화 제5권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만화의 번역물 중 제104.5 내지 112화는 원고가 이 사건 만화 제5권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을 취득한 후에 게시되었으므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다.

마) 위와 같은 항목을 종합하여 계산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회차	이용자수	유료결제자 추정비율	회차당 추정매출	회차당 추정 피해액 (원 단위 이하 버림)
1	29,273	0.397	45.9	533,421원
2~38	29,273	0.397	222.9	2,590,405원
합계				96,378,406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배타적발행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96,378,406원 및 최종 침해행위일인 2024. 6.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희찬

판사 김현호

판사 장 영



별지

회차	조회수 추정	실제 불법경로 조회자 전체 추정 배수	유료결제자 추정 비율	회차당 추정매출	추정 피해액
1	44,510	4.904	0.397	45.94618262	3,981,512
2	27,158	4.904		222.9730913	11,789,387
3	25,842	4.904		222.9730913	11,218,106
4	24,926	4.904		222.9730913	10,820,467
5	24,016	4.904		222.9730913	10,425,433
6	23,178	4.904		222.9730913	10,061,654
7	23,206	4.904		222.9730913	10,073,809
8	21,979	4.904		222.9730913	9,541,164
9	21,430	4.904		222.9730913	9,302,841
10	20,802	4.904		222.9730913	9,030,224
11	20,639	4.904		222.9730913	8,959,465
12	20,351	4.904		222.9730913	8,834,443
13	20,434	4.904		222.9730913	8,870,474
14	20,187	4.904		222.9730913	8,763,250
15	19,538	4.904		222.9730913	8,481,517
16	19,648	4.904		222.9730913	8,529,268
17	19,293	4.904		222.9730913	8,375,161
18	19,243	4.904		222.9730913	8,353,456
19	19,268	4.904		222.9730913	8,364,309
20	19,250	4.904		222.9730913	8,356,495
21	19,204	4.904		222.9730913	8,336,526
22	19,155	4.904		222.9730913	8,315,255
23	19,100	4.904		222.9730913	8,291,379
24	19,312	4.904		222.9730913	8,383,409
25	19,062	4.904		222.9730913	8,274,884
26	19,154	4.904		222.9730913	8,314,821
27	18,968	4.904		222.9730913	8,234,078
28	18,942	4.904		222.9730913	8,222,791
29	18,954	4.904		222.9730913	8,228,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21

30	19,209	4.904		222.9730913	8,338,697
31	19,194	4.904		222.9730913	8,332,185
32	19,383	4.904		222.9730913	8,414,231
33	19,432	4.904		222.9730913	8,435,502
34	19,998	4.904		222.9730913	8,681,205
35	21,159	4.904		222.9730913	9,185,199
36	25,810	4.904		222.9730913	11,204,215
37	20,795	4.904		222.9730913	9,027,185
38	24,772	4.904		222.9730913	10,753,615
합계					339,105,612